

1. 상품내용

보험개시일 이후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중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유형별 담보내용 · 공제금액 · 보상한도액 및 연간보험료

구분	담보내용	공제금액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 총보상한도)			
			5천만	1억	2억	3억
산부인과 F1	단순진료 (수술,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2백만	423,000	613,000	897,000	1,166,000
		5백만	398,000	577,000	842,000	1,095,000
		1천만	265,000	384,000	562,000	730,000
산부인과 F2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5백만	1,057,000	1,530,000	2,247,000	2,921,000
		1천만	909,000	1,316,000	1,934,000	2,514,000
		1천5백만	780,000	1,128,000	1,657,000	2,154,000
산부인과 F3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 비만관련 성형수술 포함)	5백만	1,147,000	1,912,000	2,974,000	3,867,000
		1천만	987,000	1,644,000	2,559,000	3,326,000
산부인과 F4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4주 이상 28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5백만	1,486,000	2,156,000	3,151,000	4,096,000
		1천만	1,279,000	1,854,000	2,712,000	3,525,000
		1천5백만	1,097,000	1,590,000	2,324,000	3,020,000
산부인과 F5	분만 및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5백만	3,188,000	4,536,000	6,580,000	8,553,000
		1천만	2,605,000	3,707,000	5,378,000	6,991,000
		1천5백만	2,233,000	3,178,000	4,611,000	5,995,000
		3천만	1,860,000	2,648,000	3,842,000	4,574,000
산부인과 F6	분만 및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4주 이상 28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5백만	3,602,000	5,118,000	7,440,000	9,673,000
		1천만	2,943,000	4,184,000	6,083,000	7,908,000
		1천5백만	2,524,000	3,584,000	5,214,000	6,778,000
		3천만	2,102,000	2,988,000	4,345,000	5,247,000
마취과 B2	단순처치(단순검사행위 포함) + 부분/전신마취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정맥마취, 흡입마취)	5백만	1,057,000	1,530,000	2,247,000	2,921,000
		1천만	909,000	1,316,000	1,934,000	2,514,000
		1천5백만	780,000	1,128,000	1,657,000	2,154,000
		3천만	673,000	973,000	1,430,000	1,859,000
소아과/내과 영상의학과 A	기본진료(외래)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국소마취	5백만	398,000	577,000	842,000	1,095,000
		1천만	265,000	384,000	562,000	730,000
		1천5백만	238,000	346,000	506,000	658,000
		3천만	218,000	316,000	462,000	600,000

특별약관	연간 총보상한도액 (1청구당, 의사1인당)	연간보험료			공제금액
		소아과	마취과	산부인과	
일반시설 / 경호비용	7백만 / 7백만	190,000	225,000	250,000	100,000
벌금	2천만		45,000		
형사방어비용 II	1천만		70,000		
폭행 및 파괴행위	사망후유 / 재물손해 1억원		58,000		
초빙의 / 마취의	5천만원		342,000		10,000,000
의료사고 가처분 비용	1백만원		40,000		지급보험금 대비 20%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 건물 화재보험 · 영업배상 책임보험 별도문의

3. 보험조건

- 1)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조항
- 2) 일반시설배상책임 담보조항 (일반시설만 담보 - 주차장, 생산물 제외)
- 3)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 4) 벌금 담보 추가 특별약관
- 5) 형사방어비용 담보 추가 특별약관
- 6)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특별약관
- 7) 초빙의 및 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F5, F6가입시 자동담보)
- 8) 비만 및 비만관련 성형수술 의료행위 : F3, F4, F5, F6 가입시 자동담보, 단, 턱뼈, 광대뼈 등 뼈 관련 수술 부담보
- 9) 의료사고 관련 가처분 신청비용 보장 특별약관
- 10) 소급담보일자 : 개원의별 최초 보험 가입일
 가입기간에 공백이 존재할 경우 보험재개시일 / 보상한도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는 보험재개시일 / 공제금액 감액의 경우, 무사고 확인서 첨부조건
- 11) 보고연장담보기간 : 60일
 ※ 선택적보고연장기간 : 보험기간 1년
 - 산부인과 개원의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
 - 만기시점 누적경과손해율 150% 미만 계약자에 한해 가입가능
- 12) 개원의 400명 이상 가입조건
- 13) 보험기간 중 의사수의 변동으로 인한 복수의사 할인을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
- 14)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2회분납(2%할증), 4회분납(3%할증)
 2분납: 1회차(60%), 2회차(5개월후 40%)
 4분납: 1회차(35%), 2회차(2개월후 25%), 3회차(5개월후 20%), 4회차(8개월후 20%)
- 15)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특별약관
- 16) 대진의 담보. 단, 다음에 한함
 - 운용기간 : 연중 30일 (세미나, 학술대회, 휴가, 예비군훈련 등)
 - 대진의 진료범위는 기존고객의 통상적인 의료행위 및 간단한 처방에 국한되며 고도의 처방을 요하는 진료는 보험 증권상의 피보험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대진의(당직의) 담보 : 운영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진료의 경우, '초빙의/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가입 사항임.
 - 대진의 사용 전 사전 통보된 경우만 담보
- 17) "당직의"의 정의 : 기명피보험자인 개원의에 의해 일정기간 고용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 퇴근 후 출근 전까지 환자접수 및 응급조치수준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 18) 복수의사 가입 시 할인

구분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배수	17%	21%	24%	28%	31%	34%	38%	40%
2배수	15%	18%	21%	24%	27%	30%	33%	35%
3배수	-	14%	17%	19%	22%	24%	25%	28%

19) 무사고 할인 / 사고할증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만 해당)

	구분	할인 / 할증
할인	2년차 이상 무사고 갱신시	기본보험료의 3%할인
	3년차 이상 무사고 갱신시	기본보험료의 5%할인
	5년차 이상 무사고시	기본보험료의 10%할인
	7년차 이상 무사고시	기본보험료의 20%할인
할증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O/S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료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발생손해액(O/S포함) 1천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15%할증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발생손해액(O/S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30%할증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발생손해액(O/S포함)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50%할증
	갱신일 1개월 이전부터 직전 1년간 발생손해액(O/S포함) 5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70%할증

20)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LMA5399)

21) 손해분담특별약관 : 피보험자분담비율 10%

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증권(보험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 건물 화재보험 · 영업배상 책임보험 별도문의

가입증서)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주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유익했던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5. 주요 특별약관 요약

1)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 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수습 또는 조정을 위해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경호서비스 제공 (경호원 1인 24시간 기준 연 50일)

2) 벌금담보 특별약관

의료행위의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3) 형사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

4)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특별약관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손해와 재물손해를 보상 (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5) 초빙의 및 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 (마취의사 포함)

6) 의료분쟁 관련 가처분 신청비용 보장 특별약관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환자 측이 제기하는 시위,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보험조건에 따라 지급

▶ 보험가입 문의처 및 사고 접수처

보험가입 문의처

-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무국
TEL. 02-3487-8271
- ◆ 전지역 보험가입 문의 및 상담
- 한국단체보험연합(주) TEL. 02-717-9481 / FAX. 0507-770-7374

보상 문의처

- ◆ 사고접수 및 상담 : 현대해상 손해사정팀
- 서성원 과장 TEL. 02-3701-8496 / FAX. 050-7770-3247
- 세종손해사정 박경섭 이사 : 010-8345-2898
- 해성손해사정 김기윤 전무 : 010-4245-6111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 건물 화재보험 · 영업배상 책임보험 별도문의